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사무편람

2024. 1.

《 목 차 》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 범위	1
제2장 교통문화지수 심의위원회	1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2
제3장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2
제7조 대상기관	2
제8조 조사 항목 및 평가지표 등	2
제9조 조사방법	3
제10조 관측지점 및 지점 수 선정	3
제11조 조사의 시간적 범위	3
제4장 교통문화지수 조사	4
제12조 조사 절차	4
제13조 평가지표별 조사표의 작성	4
제14조 조사계획서의 작성	4
제15조 조사원 선발	4
제16조 조사원 교육	4
제17조 현장 조사	4
제18조 현장 조사의 감독	5
제19조 조사 자료의 검사	5
제20조 조사 자료의 입력	5
제5장 교통문화지수의 산정 및 결과의 공표	5
제21조 평가지표별 정량화	5
제22조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및 가중치	5
제23조 교통문화지수의 산출 및 결정	6
제24조 교통문화지수 지자체별 등급 결정	6
제25조 교통문화 우수지자체의 선정	6
제26조 조사결과의 공표 및 활용	6
제27조 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	6
제28조 조사자료의 보관	7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사무편람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편람은 「교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제2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편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측조사”란 조사대상을 조사원 또는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관찰 또는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문헌조사”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 또는 교통안전 실태 서면자료를 이용한 조사를 말한다.
3. “설문조사”란 조사 응답자의 생각, 행동,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조사원 면접,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측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4. “현장조사”는 관측조사 및 설문조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교통문화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다른 제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편람을 적용한다.

제2장 교통문화지수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공단은 실태조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통문화지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작성·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2. 교통문화지수 사무편람 중 평가지표 및 방법, 가중치 등 중요내용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조사지점 수 및 설문조사 표본수, 평가지표별 조사표, 조사 항목 및 평가지표 정량화 등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교통안전 관련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인
2. 교통문화지수 직무 관련 공단 소속 2급 이상 임직원 1인

3.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사람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실태조사의 체계 확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척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단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⑥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 제7조(대상기관)** ①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전국 229개 시·군·구(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통·폐합 및 신설 등을 반영하여 조사대상 지자체 수를 결정한다.
- ② 조사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구 30만 이상시, 인구 30만 미만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 제8조(조사 항목 및 평가지표 등)** ① 교통문화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통문화지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나 향후 조사항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예비항목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따로 조사할 수 있다.
1. 운전행태
 2. 교통안전

3. 보행행태

- ② 교통안전항목은 지자체별 교통안전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지자체별 교통안전실태는 지자체교통안전행정노력도로 조사하고, 교통사고 발생정도는 교통사고 사상자수로 조사한다.
- ③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산정에 필요한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조사방법) ① 교통문화지수 조사 항목 중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기타항목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은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 ② 각 조사 항목별 평가지표 조사 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5와 같으며, 평가지표 및 조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측지점 및 지점 수 선정) ① 교통문화지수 관측지점은 별표 6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선정지점이 제2항에 따른 관측조사 지점 수보다 많은 경우 최근 3년간 당해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② 관측조사 지점 수는 지자체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구를 고려하여 그룹 별로 별표 7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조사재원과 조사인력,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③ 각 지자체별 조사지점은 지점명, 위성사진 등이 담긴 지점관리대장 형태로 관리한다.

제11조(조사의 시간적 범위) ①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조사 항목을 각 평가지표별로 연 1회 실시한다.

- ② 관측조사는 기상조건 및 교통조건을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맑은 날에 실시하되,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동차 유입이 많은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속도로 안전띠/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조사는 주말, 공휴일에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측조사 시간은 별지 제1호의 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조사결과 표본수가 3건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 표본수가 부족하거나, 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설문조사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실시하며,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
- ⑤ 문헌조사는 조사 항목을 지자체 교통안전 행정노력도와 교통사고 사상자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지자체 교통안전 행정노력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당해연도분 서면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의 지자체별 교통사고 통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잠정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교통문화지수 조사

제12조(조사 절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조사 설계 및 준비, 관측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조사 자료 처리, 교통문화지수 산정, 결과의 공표 및 사후관리의 단계로 실시하며 그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제13조(평가지표별 조사표의 작성) ① 평가지표별 조사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부터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지표별 조사표에는 조사 내용 이외에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원 확인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계획서의 작성) ① 공단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조사계획서에는 조사항목별 평가지표, 조사방법, 조사지점, 조사 표본수, 조사표 양식, 조사투입인원, 조사 소용비용, 조사일정과 관련 기관의 조사협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사대상을 특정하여 시행하는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수행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파라미터(접속 횟수, 응답 소요시간 등)를 수집해야 한다.

제15조(조사원 선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원으로 선발한다.

1. 조사방법을 이해하고 조사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
2. 조사기관의 조사원 교육을 이수한 자

제16조(조사원 교육) ① 공단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절차, 조사준비물
2. 평가지표별 조사표 작성요령, 응답 거부자 응대방법(설문조사의 경우)
3. 평가지표별 조사표 현지 검사요령, 조사표 관리 및 제출 방법
4. 조사자료에 대한 공개 및 배포 금지 등 조사보안 수칙
5. 조사결과의 조작 금지 등 윤리청렴 수칙(윤리청렴 서약서 작성)

② 공단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사시 대처 요령 및 조사자 교통안전 수칙
2. 조사원 명찰 및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③ 공단은 조사원 선발과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현장 조사) ① 공단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지점의 적합성 확인 및 조사방법 연습, 유효 표본수 확인 등을 위해 조사방법과 일정을 명시한 조사계획서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마친 후 실제조사 및 조사표 회수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준비 내용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서에 따라 본 조사를 실시한다.

③ 공단은 본 조사의 집계 및 검사를 통해 발견된 오류를 보완하거나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현장 조사의 감독) 공단은 현장 조사의 원활하고 정확한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감독관을 조사 일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감독관의 운영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조사자료의 검사) 공단은 조사자료가 조사계획서에서 계획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수나 오류 등에 따라 발생한 오차를 수정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조사자료의 입력) ① 공단은 범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숫자 부여 등이 필요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부호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 등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디지털화)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완료 즉시 범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교통문화지수의 산정 및 결과의 공표

제21조(평가지표별 정량화) ① 공단은 각 지자체별로 조사 항목에 대하여 평가지표별로 정량화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정량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문화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지표별 산출방법 및 가중치) ① 교통문화지수 산출방법은 별표 9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 산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통문화지수의 산출 및 결정) ① 공단은 제22조 제1항 별표 9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 산출방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교통문화지수를 산출한 후 조사 항목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지수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문화지수 산출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③ 공단은 지자체별로 별표 1의 조사항목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지표별 계산값을 산출하고 100점 만점의 산출평균으로 산출하여 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를 결정한다. 다만, 지자체의 교통특성 및 여건상 지수의 일부 평가지표의 산출이 불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및 지자체별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와 관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조사 항목 및 평가지표의 지수값과 함께 지자체별 순위 및 등급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통문화지수 산정 방안은 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교통문화지수 지자체별 등급 결정) 공단은 지자체별 교통문화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제23조에 따라 결정된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토대로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그룹별로 별표 10과 같이 등급을 부여하고,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별로 세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등급을 부여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편차가 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교통문화 우수지자체의 선정) ①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7조 제2항에 따른 그룹별로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 실태 향상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지자체는 교통문화지수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교통안전 정책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영역을 추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상 규모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조사결과의 공표방법) 실태조사 결과는 그룹별 교통문화지수와 함께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조사 항목별로 등급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 및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각 지자체에 예비공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공표한다. 단, 예비공표 후 기제출한 공문에 대한 증빙자료 중 시스템 오류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별도 공지한다.

제27조(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 ① 공단은 조사계획서의 수립부터 현장 조사 결과, 조사자료의 입력 및 처리, 교통문화지수의 산출 과정 및 통계자료와의 상관관계 등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교통문화 수준 향상 및 교통안전실태 개선 방안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책자와 파일의 형태로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자는 전국 지자체의 교통행정 부서에 배포하고 파일은공단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게재한다. 단, 배포용 책자는 인포그래픽 형식의 요약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자료의 보관) 공단은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3년간 보관한다.

[별표 1]

교통문화지수 조사항목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제8조 제3항 관련)

조사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운전행태 (55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12	
		방향지시등 점등률	8	
		신호 준수율	10	
		안전띠 착용률	7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7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4	
		음주 운전 금지 준수율	3	
		제한 속도 준수율	4	
보행행태 (20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7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7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6	
교통안전 (25점)	지 자 체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11점)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2.5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3.5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2.0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3.0	
	교통사고 사상자수 (14점)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	5	
		인구 및 도로연장 당 보행자 사상자 수	5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4	
기타항목		고속도로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
		도시부 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준수율	-
			이륜자동차 주행 준수율	-
		교통안전법규 준수 의식수준		-

※ 시범조사는 2년간 실시하고, 평가지표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정규지표로 추가할 수 있음

[별표 2]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 평가지표 조사방법(제9조 제2항 관련)

1.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 관측조사

- 가. 교차로 운행자동차(편도기준) 정지선 준수여부 파악
- 나. 교차로 통행 자동차로 한정(단, 이륜자동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다. 용도구분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하며, 자동차번호판의 사업용(황색과 비사업용(녹색·백색))으로 구분함
- 라. 각 지역별/차로별/차종별/용도별/시간대별로 정지선 준수율 파악
- 마. 정지선 준수여부 평가기준
 - 1) 교차로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일 때
 - 2) 교차로 내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일 때 정지선 준수여부
- 바. 우회전 자동차 평가기준
 - 1)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신호에 따름
 - 2)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일 경우
 - 가) 우회전 전용차로일 경우 평가에서 제외
 - 나) 직전 + 우회전 차로일 경우는 평가시점에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위치 자동차가 직진 자동차일 경우만 평가하고, 우회전 자동차는 평가에서 제외
 - 다) 교차로 형태가 안전지대로 직진과 우회전이 분리된 경우 우회전 자동차는 평가에서 제외

2. 방향지시등 점등률 : 관측조사

- 가. 교차로 운행자동차(편도기준) 방향지시 점등여부 파악
- 나. 교차로 통행 좌회전 및 우회전 대기 자동차에 한함(단, 오토바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다. 용도구분은 자동차번호판의 사업용(황색)과 비사업용(녹색·백색)으로 구분함
- 라. 방향지시등 점등여부 평가기준 : 신호 교차로에서 각 방향의 좌회전 교통류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방향을 선정하되, 좌회전 진행 중인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자동차와 미점등 자동차를 조사하여 평가함

3. 신호 준수율 : 관측조사

- 가. 교차로 운행자동차(편도기준) 신호준수 여부 파악
- 나. 교차로 통행 자동차로 한정(단, 오토바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다. 용도구분은 자동차번호판의 사업용(황색)과 비사업용(녹색·백색)으로 구분함

라. 신호준수여부 평가기준

- 1) 교차로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 이후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의 안전지대(Junction)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판단
- 2) 교통량이 많아 상습 정체가 일어나거나 출·퇴근시간 교통경찰의 신호조작 및 교통봉사대 등의 수신호에 의해 교차로가 운영되는 곳은 제외
- 3) 꼬리물기의 행태에 의한 신호준수율 위반은 별도로 표시

4. 안전띠 착용률 : 관측조사

가. 교차로 운행자동차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 안전띠 착용 준수여부 파악

나. 용도구분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하며, 자동차번호판의 사업용(황색)과 비사업용(녹색 · 백색)으로 구분함

다. 각 지역별/차로별/차종별/용도별/시간대별로 안전띠 착용률 파악

라. 안전띠 착용 준수여부 평가기준

- 1) 교차로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일 때
- 2) 횡단보도 정지선 상 첫 번째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유무 조사
- 3) 뒷좌석 탑승자의 어깨가 정확하게 보이는 경우만 안전띠 착용 ‘준수’, ‘비준수’를 구별하여 표시하며 뒷좌석 탑승자가 있으나 어깨(안전띠 위치)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식별 안됨’, 뒷좌석 탑승자가 없는 경우는 ‘사람 없음’

5.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 관측조사

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행 이륜차(편도기준) 안전모 착용 준수여부 파악

나. 안전모 착용 준수여부 평가기준 : 이륜차(오토바이)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의 경우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두 조사

6.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 설문조사

가. 조사 내용 :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경험 파악

나.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

다. 조사 기준 : 최근 30일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운전자 비율

7. 음주 운전 금지 준수율 : 설문조사

가. 조사 내용 : 음주 운전 경험 파악

나.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

다. 조사 기준 : 최근 30일간 음주 운전 경험 운전자 비율

8. 제한 속도 준수율 : 설문조사

가. 조사 내용 : 도로 제한 속도 위반 경험 파악

나.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

다. 조사 기준 : 최근 30일간 제한 속도 위반 운전자 비율

[별표 3]

교통문화지수 보행행태 평가지표 조사방법(제9조 제2항 관련)

1.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 관측조사

가. 조사 내용 : 전체 횡단보도 이용자와 횡단 시 녹색신호 안에 횡단을 완료하는지를 조사

나. 조사 대상 : 양쪽의 자동차 정지선 이내에서 횡단한 보행자

다. 조사 기준

- 1)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적색신호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횡단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경우 횡단보도 신호 미준수로 체크하며, 횡단의 종료 여부는 보도와 도로의 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를 벗어나 보도에 올라서는 것을 기준으로 함
- 2)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전체 횡단자수를 조사하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도 완전히 도로의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를 횡단보도 신호 위반자로 체크

2.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 관측조사

가. 조사 내용 : 전체 횡단보도 이용자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MP, MP3, 게임기 등)를 사용(화면을 보는 행위, 이어폰을 이용하는 행위 등)하며 횡단하는지 여부를 조사함

나. 조사 대상 : 양쪽의 자동차 정지선 이내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중 조사원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다. 조사 기준

- 1) 횡단보도 앞 보도에서 신호대기시 스마트기기 화면을 보는 행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2)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 스마트기기 화면을 보는 보행자와 이어폰을 귀에 꽂고 횡단하는 보행자는 스마트기기 사용자로 판단함
- 3) 보행신호는 적색, 녹색, 황색, 점멸 신호에 무관하게 횡단을 하는 모든 보행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3.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 설문조사

가. 조사 내용 : 횡단보도 인근지역이나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경험 파악

나.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도로 이용자

다. 조사 기준 : 최근 30일간 무단횡단한 경험이 있는 보행자 비율

교통문화지수 기타항목 평가지표 조사방법(제9조 제2항 관련)

1. 고속도로 안전띠/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 관측조사

가. 조사 내용 : 요금지불을 위해 톨게이트에 잠시 정차한 일반 요금소 자동차의 운전자, 조수석, 뒷좌석(유아용 카시트) 승차자의 안전띠 조사 및 유아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 카시트 착용여부를 조사

나. 조사 대상 :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지불을 위해 정차/통과하는 지나는 자동차

다. 조사 기준

- 1) 요금 지불을 위해 일반요금소를 통과하는 자동차에 탑승한 승차자(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으며 ‘준수’,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비준수’
- 2) 뒷좌석 탑승자의 어깨가 정확하게 보이는 경우만 안전띠 착용 ‘준수’, ‘비준수’를 구별하여 표시하며 뒷좌석 탑승자가 있으나 어깨(안전띠 위치)가 잘 안보이는 경우에는 ‘식별 안됨’, 뒷좌석 탑승자가 없는 경우는 ‘사람 없음’
- 3) 6세 미만의 유아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6세 미만의 유아가 동승한 경우 카시트에 앉아 있으면 ‘착용’, 앉아있지 않으면 ‘미착용’ 6세 미만의 유아가 동승하였더라도 유아용카시트가 없으면 ‘없음’

2. 도시부 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 관측조사

가. 조사 내용 : 조사지점 횡단보도 앞 정지선 맨 앞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의 내부를 관찰하여 유아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 카시트착용여부를 조사

나. 조사 대상 :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보도쪽 바깥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

다. 조사 기준

- 1)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 2) 유아용 카시트가 있고, 6세 미만의 유아가 카시트에 앉아 있으면 ‘착용’, 앉아 있지 않으면 ‘미착용’
- 3) 유아가 탑승했으나 유아용 카시트가 없으면 ‘카시트 없음’(6세 미만의 유아가 2명인 경우는 복수체크 하도록 하며, 3명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3.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준수율 : 관측조사

가. 조사 내용 : 관측 범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행 행태 조사

나. 조사 대상 : 관측범위를 통과하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다. 조사 기준

- 1) 조사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이 해당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두 준수’
- 2) 지정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 ‘역주행’,

조사 범위 내의 인도(횡단보도 포함)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 '인도침범(보도주행)',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 미착용',
운행 시 2인 이상 동반하여 탑승하는 경우 '동반탑승'

4. 이륜자동차 주행 준수율 : 관측조사

가. 조사 내용 : 관측범위 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주행 행태 조사

나. 조사 대상 : 신호, 차로, 방향 관계없이 교차로 중심 반경 100m의 차로 및 인도를
통과하는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자

다. 조사 기준

1) 조사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이 해당 없는 이륜차는 '모두 준수'

2)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위반',

인도나 보도에서 주행하는 경우 '인도침범(보도주행)',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 하는 경우 '역주행',

진로 변경 금지된 곳에서 진로변경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달리는 두 대의 차량 사이로
주행하는 등 차로위반 할 경우 '차로위반',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정지선 위반',

유턴 지역이 아닌 위치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불법유턴'

5. 교통안전법규 준수 의식수준 : 설문조사

가. 조사 내용 :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한 준수 의식

나.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도로 이용자

다. 조사 기준 :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 각 평가지표에 대한 교통안전법규 위반 경험 여부를 조사

[별표 5]

교통문화지수 설문설계 및 표본수 결정(제9조 제2항 관련)

1. 설문 설계

- 가.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도로 이용자
- 나. 조사 시기 : 당해연도 5월 1일~10월 31일
- 다. 조사 방법 : 조사원 일대일 면접, 우편, 전화, 인터넷 등 활용
- 라. 표본 추출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성별, 연령별 인구 등을 고려한 비례할당

2. 설문조사 표본 수 결정

표본 수 산정 식

$$n = (z_{\alpha/2} \times \frac{CV}{d})^2 / (1 + (z_{\alpha/2} \times \frac{CV}{d})^2 / N)$$

여기서,

N : 모집단의 수

n : 표본 수

$z_{\alpha/2}$: 유의수준 5%($z_{\alpha/2} = 1.96$)

CV : 표본의 변동계수 ($=s/\bar{x}$, [표본의 표준편차]/[표본의 평균])

d : 오차한계 (0.03~0.05 적용)

주) 표본의 변동계수는 전년도 또는 사전조사 자료 활용

[별표 6]

교통문화지수 관측조사지점 선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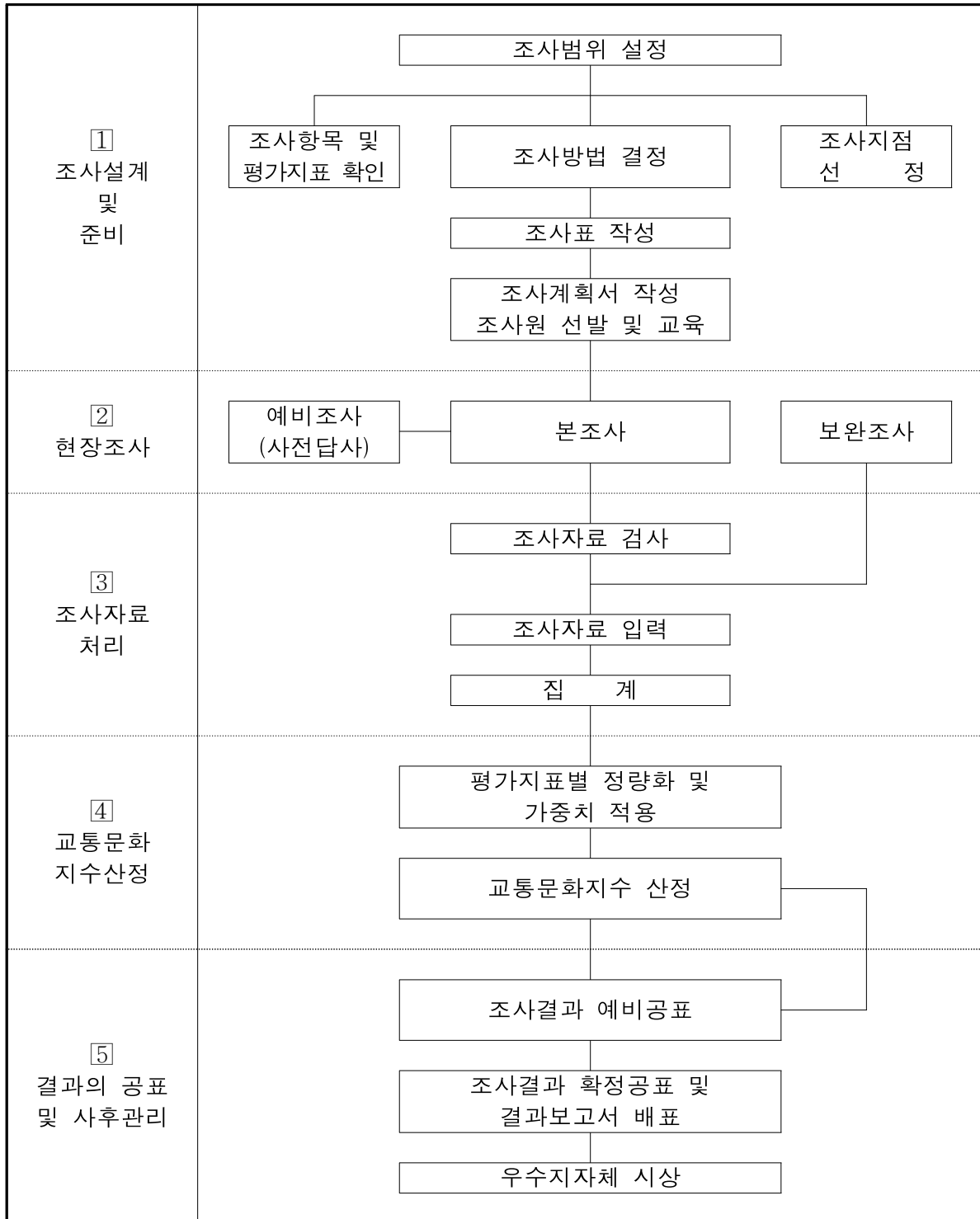
구 분	선정기준	비 고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주변 도로선정(land mark) 2. 현지차량과 현지인이 외부차량과 외부인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지점 3. 다음 지점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 중인 도로 구간, 도시와 도시의 경계지점 나. 신호위반 단속 장비(다기능 단속장비를 포함한다)설치지점 다. 조사시간대에 교통지도 활동이 실시되는 지점 라. 같은 교통축에 연달아 인접해 있는 교차로 마. 병목지점 4.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점 	
운전 행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도 2차로 이상이며,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신호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제외함) 2. 사지교차로를 원칙으로 하여, 오거리 및 삼거리 지점은 제외(불가피할 경우는 선정하나 별도로 표시함) 3. 차량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이격 거리가 3m 이내인 교차로 4. 방향지시등 점등률의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하는 차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 전방향이 잘 보이는 교차로 	
보행 행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도 2차로 이상의 4지 교차로의 횡단보도(주변 보행량이 많은 단일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변경 가능함) 2. 버스중앙차로의 횡단보도, 대각횡단보도, 2단 횡단보도 제외 3. 보행시간 잔여시간 표시기(숫자, 도형 모두 포함)가 설치된 횡단보도(군지역 등 보행시간 잔여시간 표시기가 없는 경우는 일반 보행신호기만 있어도 가능) 4. 특정대상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학교앞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제외(군지역 등 조건을 만족하는 교차로가 없는 경우는 가능) 	

[별표 7]

교통문화지수 그룹별 관측조사 지점 수(제10조 제2항 관련)

그룹	분류기준	지자체 수	지자체당 조사지점수	총 조사지점수
A	인구 50만명 이상 시 (광역시 제외)	15	3~7	45~105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	14	3~5	42~70
B	인구 30만명 미만 시	49	3~5	147~245
C	군	82	1~3	82~246
D	자치구	69	3~5	207~345
계	-	229	-	523~1,011

교통문화지수 조사 절차(제12조 관련)



[별표 9]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 산출방법(제22조 제1항 관련)

1. 운전행태 평가지표별 산출식

평가지표	산출 방법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left[\frac{\text{정지선 준수 자동차 수}}{\text{전체 관찰 자동차 수}} \right]$	X	100
방향지시등 점등률	$\left[\frac{\text{방향지시등 점등 자동차 수}}{\text{전체 관찰 자동차 수}} \right]$	X	100
신호 준수율	$\left[\frac{\text{신호 준수 자동차 수}}{\text{전체 관찰 자동차 수}} \right]$	X	100
안전띠 착용률	$\left[\frac{\text{안전띠 착용 승차자(운전석+조수석+뒷좌석) 수}}{\text{전체 관찰 자동차의 승차자(운전석+조수석+뒷좌석) 수}} \right]$	X	100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left[\frac{\text{안전모 착용자(운전자+동승자) 수}}{\text{전체 관찰 이륜차의 승차자(운전자+동승자) 수}} \right]$	X	100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left[1 - \frac{\text{최근 30일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자 수}}{\text{전체 응답자 수}} \right]$	X	100
음주 운전 금지 준수율	$\left[1 - \frac{\text{최근 30일간 음주 운전 경험자 수}}{\text{전체 응답자 수}} \right]$	X	100
제한 속도 준수율	$\left[1 - \frac{\text{최근 30일간 제한 속도 위반자 수}}{\text{전체 응답자 수}} \right]$	X	100

2. 보행행태 평가지표별 산출식

평가지표	산출 방법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left[\frac{\text{신호 준수 보행자 수}}{\text{전체 관찰 보행자 수}} \right]$	X	100
보행자 횡단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left[1 - \frac{\text{스마트기기 사용 보행자 수}}{\text{전체 관찰 보행자 수}} \right]$	X	100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left[1 - \frac{\text{최근 30일간 무단횡단 보행자 수(횡단이 금지된 도로)}}{\text{전체 응답자 수}} \right]$	X	100

3. 교통안전 평가지표별 산출식

가. 지자체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구 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가중값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교통안전 전문 인력 확보	1.0													
	배점 기준 1. 교통안전 전담 인력 i. 1.0점 : 교통안전 전담 부서·팀이 있고 전담 인력이 2인 이상 담당 ii. 0.7점 : 교통안전 전담 부서·팀이 있고 전담 인력이 2인 미만 담당 iii. 0.5점 : 교통안전 전담 부서·팀이 없고 일반 행정인력이 2인 이상 담당 iv. 0.3점 : 교통안전 전담 부서·팀이 없고 일반 행정인력이 2인 미만 담당 v. 0.0점 : 증빙자료 미제출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육 이수 실적	1.5													
	배점 기준 1.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육 이수 i. 1.0점 : 담당 공무원 참석 및 이수 iii. 0.5점 : 교육에는 참석했으나 교육 미 이수 iv. 0.0점 : 실적 없음 2. 교통문화지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참석 i. 0.5점 : 설명회 참석 ii. 0.0점 : 설명회 미참석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운영	3.5													
	배점 기준 1.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운영 - 점수 : 교통안전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1점),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1점), 지자체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0.5점) i. 1.5점 : 교통안전협의체,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지자체교통안전기본계획, 모두 수립·운영 ii. 1.3점 :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iii. 1.0점 :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2개 중 1개), 지자체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iv. 0.7점 :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2개 중 1개) v. 0.5점 : 지자체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vi. 0.0점 : 실적 없음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2. 교통문화 향상 우수시책(1건) i. 점수 : 평점÷100×2.0 ii. 0점 : 실적 없음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그룹별 평가</th> <th>평점</th> <th>평가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td> <td>100</td> <td>추진 실적 우수</td> </tr> <tr> <td></td> <td>80</td> <td>추진 실적 양호</td> </tr> <tr> <td></td> <td>60</td> <td>추진 실적 보통</td> </tr> <tr> <td></td> <td>40</td> <td>추진 실적 미흡</td> </tr> </tbody> </table> ※ 우수시책 평가는 공단 내·외부 평가단에서 평가		그룹별 평가	평점	평가 결과		100	추진 실적 우수		80	추진 실적 양호		60	추진 실적 보통	
그룹별 평가	평점	평가 결과													
	100	추진 실적 우수													
	80	추진 실적 양호													
	60	추진 실적 보통													
	40	추진 실적 미흡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개선안 집행 실적	1.0 (가점)													
배점 기준 1.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개선안 집행률 - 기준 : 개선지점수÷대상수=A i. 1.0점 : A가 0.8 이상 ii. 0.8점 : A가 0.6 이상, 0.8 미만 iii. 0.6점 : A가 0.4 이상, 0.6 미만 iv. 0.4점 : A가 0.2 이상, 0.4 미만 v. 0.2점 : A가 0.0 초과, 0.2 미만															

(계속)

구 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가중값
교통안전부문 예산 확보 노력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안전부문 예산 확보 노력</p> <p>- 교통안전 예산 확보 산식 $= \frac{\text{당해연도 교통안전 예산(1억)}}{\sqrt{\text{주민등록인구(천명)} \times \text{자동차등록대수(천대)} \times \text{도로연장(천km)}} \times 100$ </p> <p>* 점수: $\frac{\text{교통안전 예산 확보}}{\text{목표값}} \times 2.0$, 증빙자료 미제출시 0.0점 ** 목표값: 인구 30만 이상시 11, 인구 30만 미만시 24, 군 50, 구 14 ※ 1. 교통안전 예산은 상위기관의 예산 포함(국비, 시비, 도비 등) 2. 교통안전 예산이라 함은 해당 연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미 수립시 주요 개선사업만 평가상에 명시된 사업으로 아래의 6개 주요 개선 사업과 기타 개선 사업 예산을 의미 - 교통안전 관련 주요 개선 사업 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③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④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⑥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교통안전 관련 기타 개선 사업 · 과속 방지턱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시설 설치, 무인교통 단속 장치 설치 등 교통안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수요 응답형 교통) 관련, 대중교통 기반시설 설치, 도로 건설 및 확포장 등은 제외</p>	2.0
	배점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운행기록장치 제출 실적</p> <p>1.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 = (제출대수)/(제출대상대수)×0.8</p>	0.8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 수준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적</p> <p>1. 정기점검 = 0.2점 i. 점검 완료율=(점검 완료 업체수)/(대상 업체수)×0.2 2. 특별점검 = 1.0점 i. 점검 완료율=(행정처분 조치건수)/(행정처분건수) 3. 노상안전점검 = 1.0점 i. 점검 완료율=(점검 완료 건수)/(대상 업체수) ※ 대상 업체수 0 = 그룹 내 점검 완료율 중간값(median)</p>	2.2
	배점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p> <p>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선정) (0.3점) i. 0.3점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운수회사가 1개 이상인 경우 ii. 0점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운수회사 없음 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후보 추천 (0.2점) i. 0.2점 : 우수사업자 추천요건을 만족하는 여객 및 화물 업체 중 각 업종별 1개사 이상의 운수회사를 추천한 경우 ii. 0.1점 : 우수사업자 추천요건을 만족하는 여객 또는 화물 업체 중 1개 업종의 운수회사를 1개사 이상 추천한 경우 iii. 0점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p>	0.5 (가점)

주1) 통계자료(주민등록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는 당해연도 6월30일 기준 자료(고속도로 제외) 사용
 주2) 가점 항목은 지자체교통안전행정노력도 배점 11점 내에서 부여 가능

나. 교통사고 사상자수

평가지표	산출 방법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	$\left[\frac{4 \times \text{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 1 \times \text{연간 교통사고 부상자수}}{\sqrt{\text{주민등록인구(천명)} \times \text{도로연장(천km)}}} \right]$
인구 및 도로연장 당 보행자 사상자 수	$\left[\frac{4 \times \text{연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수} + 1 \times \text{연간 교통사고 보행자 부상자수}}{\sqrt{\text{주민등록인구(천명)} \times \text{도로연장(천km)}}} \right]$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left[\frac{4 \times \text{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 1 \times \text{연간 교통사고 부상자수}}{\sqrt{\text{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천대)} \times \text{도로연장(천km)}}} \right]$

- 주 1) 통계자료(주민등록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사망자수)는 당해연도 6월30일 기준 자료(고속국도 제외) 사용
 2) 평가지표 값의 백분위 정규화는 Re-Scale법 적용: $\frac{(\text{최댓값} - \text{실제값})}{(\text{최댓값} - \text{최솟값})} \times 100$
 3) 최댓값, 최솟값은 최근 3년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이상치(3σ)를 제거한 값으로 함

4. 기타항목 평가지표별 산출식

평가지표	산출 방법
고속도로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left[\frac{\text{안전띠 착용 승차자(운전석+조수석+뒷좌석) 수}}{\text{관찰 자동차의 승차자 수}} \right] \times 100$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left[\frac{\text{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한 유아 수(미착용, 없음도 각각 산출)}}{\text{관찰 자동차의 유아 수}} \right] \times 100$
도시부 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left[\frac{\text{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한 유아 수(미착용, 없음도 각각 산출)}}{\text{관찰 자동차의 유아 수}} \right] \times 100$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준수율 $\left[\frac{\text{주행실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개인형 이동장치 수}}{\text{전체 관찰 개인형 이동장치 수}} \right] \times 100$
	이륜자동차 주행 준수율 $\left[\frac{\text{주행실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이륜자동차 수}}{\text{전체 관찰 이륜자동차 수}} \right] \times 100$
교통안전법규 준수 의식수준	$\left[1 - \frac{\text{평가지표별 최근 30일 간 교통안전법규 위반자 수}}{\text{전체 응답자 수}} \right] \times 100$

주) 교통안전법규 준수 의식수준은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의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

교통문화지수 등급 구분(제21조제5항 관련)

그룹		등급	지자체 수	비중
A	인구 30만명 이상 시 (광역시 제외)	A	3	10%
		B	7	25%
		C	9	30%
		D	7	25%
		E	3	10%
		소 계	29	100%
B	인구 30만명 미만 시	A	5	10%
		B	12	25%
		C	15	30%
		D	12	25%
		E	5	10%
		소 계	49	100%
C	군	A	8	10%
		B	20	25%
		C	26	30%
		D	20	25%
		E	8	10%
		소 계	82	100%
D	자치구	A	7	10%
		B	17	25%
		C	21	30%
		D	17	25%
		E	7	10%
		소 계	69	100%

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ID	시·도	조사지점		
						

[운전행태] 안전띠 준수율 조사표

조사장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교차로명	우회전차로	① 직진 + 우회전 ② 우회전 전용
세부위치	() 건물/상호 앞에서 () 방향	
조사시점	① 오전 ② 오후	()월 ()일 ()시 ()분 ~ ()시 ()분
차로수	편도 ()차로	신호주기 전체 ()초 신호등 ()초
조사원명	연락처	

주 의 사 항


※ 조사시간대 : 오전 10:15~11:15, 오후 16:30~17:30에 조사하시고, 위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세요

※ 신호주기 기준 : 전체 -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부터 다음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까지의 주기
신호등 -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부터 녹색 신호등이 꺼지는 시점까지의 주기

※ 차량 구분 : 화물 - 1톤 초과인 대형트럭을 의미 / 트럭 - 1톤 트럭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 번째 주기	차량 구분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안전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 번째 주기	차량 구분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④ 특수 ⑧ 기타
안전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④ 사람없음		

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ID	시·도	조사지점		
						

[운전행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를 조사표


조사장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교차로명			우회전차로	① 직진+우회전	② 우회전 전용
세부위치	() 건물/상호 앞에서 () 방향				
조사시점	① 오전	② 오후	()월 ()일 ()시 ()분~()시 ()분		
차로수	편도()차로		신호주기	전체()초	신호등()초
조사원명			연락처		

주 의 사 항

※ 조사시간대 : 오전 11:30~12:30, 오후 17:45~18:45에 조사하시고, 위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세요
 ※ 신호주기 기준 : 전체 -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부터 다음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까지의 주기
 신호등 -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부터 녹색 신호등이 꺼지는 시점까지의 주기
 ※ 차량 구분 : 화물 - 1톤 초과인 대형트럭을 의미 / 트럭 - 1톤 트럭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 번째 주기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정지선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 번째 주기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① 택시 ⑤ 승용 ② 버스 ⑥ 승합 ③ 화물 ⑦ 트럭 ④ 특수 ⑧ 기타
	정지선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ID	시·도	조사지점		
						


[보행행태] 보행자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사표

조사장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교차로명			우회전차로	① 직진+우회전	② 우회전 전용
세부위치	() 건물/상호 앞에서 () 방향				
조사시점	① 오전	② 오후	()월 ()일 ()시 ()분 ~ ()시 ()분		
차로수	편도()차로		신호주기	전체()초	신호등()초
조사원명			연락처		

주 의 사 항

- ※ 조사시간대 : 오전 09:00~10:00분, 오후 15:15~16:15에 조사하시고, 위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세요
- ※ 신호주기 기준 : 전체 -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부터 다음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까지의 주기
신호등 -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켜진 시점부터 녹색 신호등이 꺼지는 시점까지의 주기
- ※ 유의사항 : 스마트기기는 휴대폰, 이어폰, 게임기, MP3 등을 의미합니다

구분	보행자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		
	스마트기기 사용자 수	스마트기기 미사용자 수	전체 횡단자 수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번째 주기			

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ID	시·도		조사지점		
							

[기타] 고속도로 안전띠/카시트 착용률 조사표

조사장소	경부고속도로	① 서울TG	② 수원TG	③ 북대구TG
	남해고속도로	④ 북부산TG	⑤ 동김해TG	⑥ 마산TG
	서울외곽고속도로	⑦ 구리TG	⑧ 청계TG	⑨ 김포TG
조사시점	①오전 ②오후	()월 ()일 ()시 ()분 ~ ()시 ()분		
조사원명			연락처	

주의사항

- ※ 조사시간대 : 오전 09:00~09:30, 오전 09:45~10:15, 오전 10:30~11:00
오후 13:00~13:30, 오후 13:45~14:15, 오후 14:30~15:00
- ※ 용도 구분 : 차량번호판 '① 사업용(황색)'과 '② 비사업용(녹색/흰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 ※ 뒷좌석 안전띠 : 뒷좌석 탑승자의 어깨가 정확하게 보이는 경우만 안전띠 착용 '①준수', '②비준수'를 표시
뒷좌석 탑승자가 있으나 어깨(안전띠 위치)가 잘 안보이는 경우에는 '③식별안됨'에 표시
뒷좌석 탑승자가 없는 경우는 '④사람없음'에 표시
- ※ 유아용 카시트 : 6세 미만의 유아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①해당없음'
6세 미만의 유아가 동승한 경우에 카시트에 앉아 있으면 '②착용', 앉아있지 않으면 '③미착용'
6세 미만의 유아가 동승하였다더라도 카시트가 없으면 '④없음'

구분	()번째		()번째		()번째		()번째		()번째	
차량 구분	① 택시 ② 버스 ③ 화물 ④ 특수	⑤ 승용 ⑥ 승합 ⑦ 기타	① 택시 ② 버스 ③ 화물 ④ 특수	⑤ 승용 ⑥ 승합 ⑦ 기타	① 택시 ② 버스 ③ 화물 ④ 특수	⑤ 승용 ⑥ 승합 ⑦ 기타	① 택시 ② 버스 ③ 화물 ④ 특수	⑤ 승용 ⑥ 승합 ⑦ 기타	① 택시 ② 버스 ③ 화물 ④ 특수	⑤ 승용 ⑥ 승합 ⑦ 기타
용도 구분	① 사업용(황색) ② 비사업용(녹색/흰색)		① 사업용(황색) ② 비사업용(녹색/흰색)		① 사업용(황색) ② 비사업용(녹색/흰색)		① 사업용(황색) ② 비사업용(녹색/흰색)		① 사업용(황색) ② 비사업용(녹색/흰색)	
준수 여부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① 준수 ② 비준수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뒷좌석(좌)	뒷좌석(우)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① 준수 ② 비준수 ③ 식별안됨 ④ 사람없음
유아용 카시트	① 해당없음 ③ 미착용	② 착용 ④ 없음	① 해당없음 ③ 미착용	② 착용 ④ 없음	① 해당없음 ③ 미착용	② 착용 ④ 없음	① 해당없음 ③ 미착용	② 착용 ④ 없음	① 해당없음 ③ 미착용	② 착용 ④ 없음

기타 특이사항

※ 조사 수행 및 조사 지점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기입해 주세요

